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27
----------	-----

2019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년 8월 7일
- 다. 회부일 : 2019년 8월 13일
- 라. 상정일 : 제28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8월 2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엄연숙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제18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위탁 사무 내용

○ 가출청소년 보호 사업

○ 가출청소년의 보호·상담·선도·수련활동·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문제 예방사업

○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기타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시설 개요

- 시설명 :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신관 1층)
- 시설규모 : 213평(703 m^2)
 - 생활관 118평(389 m^2), 사무동 95평(314 m^2)
- 개소일자 : 1998. 05. 20
- 이용대상 : 가출청소년(여, 정원 20명)
- 보호기간 : 3개월 내외 단기보호

5) 위탁기간 : 3년 (2020.01.01 ~ 2022.12.31)

6)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7) 소요예산 : 896,761천원

- 인건비 493,210천원, 사업비 330,820천원, 운영비 72,741천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던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강남구 삼성동)는 정원 20명으로, 여성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며, 이전 소재지의 재개발로 일시적으로 강남구 소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으로 이동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2019.12.31.)예정으로 시의회 동의(2012.7.9.)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경쟁방식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3년간(2020.1.1.~2022.12.31.)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2020년 예산은 9억9천6백만원)

〈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시설명 :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 소재지 :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신관 1층)
- 시설규모 : 703㎡(생활관 389㎡, 사무동 314㎡)
- 개소일자 : 1998. 05. 20
- 이용대상 : 가출청소년(여, 정원 20명)
- 보호기간 : 3개월 내외 단기보호
- 위탁기간 : 3년 (2020.1.1 ~ 2022.12.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896,761천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없음.

- 평생교육국은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금천청소년단기쉼터의 민간위탁금 현황 〉

(단위:천원)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민간위탁금	969,468	880,935	896,761	996,304

〈 금천청소년단기쉼터의 민간위탁 현황 〉

○ 재계약 횟수 : 4회, 총 수탁기간 : 21년 9월

- 1998. 3. 1 : 1차 위탁계약 체결 (사)한국청소년연맹(지명위탁계약)
- 2001. 3. 1 : 2차 위탁계약 체결 (사)한국청소년연맹(재계약)
- 2004. 3. 1 : 3차 위탁계약 체결 (사)한국청소년연맹(재계약)
- 2007. 3. 1 : 4차 위탁계약 체결 (사)한국청소년연맹(재위탁 공개모집)
- 2010. 3. 1 : 5차 위탁협약 체결 (사)한국청소년연맹(재위탁 공개모집)
- 2013. 1. 1 : 6차 위탁협약 체결 (사)한국청소년연맹(재계약)
- 2015. 1. 1 : 7차 위탁협약 체결 (사)한국청소년연맹(재위탁 공개모집)
- 2018. 1. 1 : 8차 위탁협약 체결 (사)한국청소년연맹(재계약)

○ 금천청소년단기쉼터는 인권, 인성, 직업 등의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2019년 현재 일평균 18명(연인원 3,329명)을 보호하고 있음.

※ 금천청소년단기쉼터의 일평균 보호인원

- 2017년 1월~12월 연인원 6,550명, 일평균 18명, 보호기간 평균 39일
- 2018년 1월~12월 연인원 6,275명, 일평균 17명, 보호기간 평균 29일
- 2019년 1월~ 6월 연인원 3,329명, 일평균 18명, 보호기간 평균 32일

○ 다만, 지도·점검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근무상황 관리 부적정,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물품검수 미이행 등이 지적되었는바, 관련 지적 사항들이 적절히 조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한 수탁법인(한국청소년연맹)이 개소 이후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독점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민간위탁이 수탁법인화 등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지적사항 〉

-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 근무상황 관리 부적정
-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물품검수 미이행
- 동시설의 경우 일반직 8명 계약직 5명(시간제 2명포함) 등 13명 배치운영하고 있어 인력은 영이 부적정함
- 2019.4. 정규직1명 채용시 20명이 응시했으나, 이중 4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구체적 선정기준이나 선정을 위한 심사 및 내부결재등 절차없이 임의로 결정하고 면접을 진행하는등 시설종사자 임용절차를 미준수함
- 계약직 종사자 인사기록카드는 작성하지 않고 있음
- 2018.7.3. 금천단기청소년 주부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 71,055,000원에 대한 계약보증금(단가계약에 의한 분할이행의 경우,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징수하여 계약 이행 담보물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미징수하고 계약을 집행함
- 시설에 대한 무인경비, 출입통제, 근태관리 등을 위해 ○○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규칙30조에 정한 지출특례 선급금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선금 할인을 이유로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고 이용 기성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인 검수검사, 대금청구 등 관련증빙서류 없이 연간이용 계약금액 전액을 2019.2.28. 일괄 지급함
- 활용불가능 물품에 대한 최종처리 절차인 매각, 해체, 폐기등 불용품해체 및 폐기 조서에 의한 폐기물처리 처분절차 미이행
- 운영위원회 기록은 관리하고 있으나, 자필서명한 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음
-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연도별 사업목 표없이 구호성 내용으로 구성되는 등 미흡
- 2018년 사업계획수립시 위수탁계약서 6조 규정에 의한 시설 안전관리계획 및 근로자 근로조건및 월별집행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평가결과의 개선·발전 사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사업개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향후 발전방안의 제시도 미흡함
- 홍보결과보고서가 별도 없어 모니터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차년도 계획에 홍보결과 환류 여부가 포함되지 않음
- 개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등구체적인 산출근거 미흡

- 단기 및 중장기 쉼터의 인력운영에 있어 신림단기쉼터와 금천단기쉼터가 수용인원이 같음에도 관련 규칙(「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2〕)과 달리 운영 인력 정원을 다르게 편성하고 있으며, 중장기쉼터의 경우, 원장, 생활지도사 2명(교대 근무), 상담사, 및 식당종사자를 포함하여 최소 운영인원은 5명 이상으로 보이나, 시행규칙상의 정원은 4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생활지도사는 2명으로 1명이 부재(휴가 또는 결근) 시 다른 인원이 이를 대직하고 있는 실정임.
- 단기쉼터와 중장기 쉼터는 법령의 개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 조치를 할 수 없는바, 쉼터의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과 단기 및 중장기 쉼터는 24시간 보호·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쉼터의 인력운영을 규정한 평생교육국의 시행규칙이 적정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2〕의 쉼터 정원 〉

연번	시설별	정원 계	일 반 직									기능직·고용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기능	고용	
29	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12	12	1	-	1	2	2	4	2	-	-	-	
30	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여)	4	4	-	-	1	-	1	2	-	-	-	-	
31	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10	10	1	1	1	1	3	2	1	-	-	-	
32	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4	4	-	-	1	-	1	2	-	-	-	-	

- 쉼터에 머무르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우울, 과도한 공격성 등이 나타나고 있어,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여, 같은 공간에 생활하는 청소년의 피해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하겠음.

- 쉼터의 지원은 학업, 자립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및 학용품 비용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청소년활동의 참여 기회 보장과 적정한 여가 또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십대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단기 쉼터의 경우 2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으나, 언론¹⁾에서는 쉼터가 범죄모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고 보도한바도 있고, 야간에는 1명의 지도자만 근무하여 보호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쉼터의 수용인원은 고정되어 있으나, 최근 쉼터를 찾는 청소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쉼터 부족현상은 심화되고 있는바, 20명인 단기쉼터의 정원 수를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는 한편, 쉼터의 추가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은 쉼터의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보강, 조직형태의 개선, 야간시간의 보호·관리 역량 강화,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의 분리 등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전문인력의 이직을 막기 위하여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행정사무와 위기 청소년 보호·관리 사무의 분리 등 위기청소년 뿐만 아니라 쉼터 종사자 처우도 함께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기청소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설계와 함께 적극적인 사업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1) 조선일보, 2018.9.27.3 가출청소년 돕는 쉼터... 탈선을 즐기는 놀이터? - 5년간 2배 늘어난 3만명 찾아... 관리 안돼 범죄모의 장소 되기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27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가출청소년 보호 사업
- 가출청소년의 보호·상담·선도·수련활동·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문제 예방사업
-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기타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시설 개요

- 시설명 :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신관 1층)
- 시설규모 : 213평(703 m^2)
 - 생활관 118평(389 m^2), 사무동 95평(314 m^2)
- 개소일자 : 1998. 05. 20
- 이용대상 : 가출청소년(여, 정원 20명)
- 보호기간 : 3개월 내외 단기보호

○ 위치도



마. 위탁기간 : 3년 (2020.01.01 ~ 2022.12.31)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896,761천원

- 인건비 493,210천원, 사업비 330,820천원, 운영비 72,741천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한경숙 (☎2133-4128)